집합투자증권 상품설명서 (고객교부용)

- ※ 본 서류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서 제공됩니다.
- ※ 본 상품은 일반 예금상품과 달리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, 투자로 인한 손실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됩니다.
- ※ 본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예금상품과 달리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상품입니다.
- ※ 본 설명서는 고객님께서 가입하신 집합투자증권의 (간이)투자설명서 외 판매사가 고객에게 안내해야 하는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. 따라서 투자상품에 대한 추가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의 (간이)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□ 상품 가입 정보

_ 00 10 0-				
상품명		우리 에이스공모주알파 증권투자신탁(채권혼합) AE		
상품의 내용		자산운용사가 작성하고 판매회사가 제공한 (간이)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		
당행부여 위험등급		4 등급 (보통 위험) 투자자산 및 과거 3년 변동성 등을 감안하여 위험등급이 부여되었습니다.		
1 등급 (매우높은위험)		3년 평균 연 변동성이 25%를 초과하거나 레버리지 등 원금 손실 위험이 매우 큰 상품 또는 최대 손실율이 20%를 초과하는 파생결합 증권에 투자하거나 이와 유사한 위험도를 가진 상품에 부여	위험선호도가 (매우)높은 투자자를 위함 상품으로서 시장 평균 수익률을 훨씬 넘어서는 (매우)높은 수준의 투자수익률을	
2 등급 (높은위험)		3년 평균 연 변동성이 25% 이하이거나, 주식 등 고위험자산에 주로 투자되어 높은 손실위험을 가지는 상품, 이와 유사한 위험도를 가진 상품에 부여	추구하며, 이를 위해 자산가치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을 적극 수용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.	
3 등급 (다소높은위험)		3년 평균 연 변동성이 15% 이하이거나, 주식 등 고위험자산에 80% 미만 투자되는 상품, 최대 손실율이 20%이하인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하거나, 이와 유사한 위험도를 가진 상품에 부여	투자원금의 보전보다는 위험을 감내하더라도 높은 수준의 투자 수익실현을 추구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	
4 등급 (보통위험)	0	3년 평균 연 변동성이 10% 이하이거나, 주식 등 고위험 자산에 50% 미만으로 투자되는 상품, 기타 회사채 등 중위험, 저위험 자산에도 투자하거나, 중위험 자산에 최소 60%이상 투자되는 상품, 이와 유사한 위험도를 가진 상품에 부여	투자에는 그에 상응하는 투자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, 예·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면 일정 수준의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.	
5 등급 (낮은위험)		3년 평균 연 변동성이 5% 이하이거나, 투자등급 채권 등 저위험자산에 최소 60%이상 투자되는 상품, 원금보존추구형 파생결합증권에 투자 하는 상품, 이와 유사한 위험도를 가진 상품에 부여	투자원금의 손실위험은 최소화하고,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수준의 안정적인 투자를 목표로 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.	
6 등급 (매우낮은위험)		3년 평균 연 변동성이 0.5% 이하이거나, MMF 또는 단기 국공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상품, 이와 유사한 위험도를 가진 상품에 부여	예금 또는 적금 수준의 수익률을 기대하며, 투자원금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.	

□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대한 안내

위법계약해지권	· 금융소비자는 은행이 금융소비자보호법 판매원칙 ^{주 1)} 을 위반하여 해당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(해당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)에 해지요구서 ^{주 2)} 와 위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여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만약,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, 위약금 등 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비용 부담 없이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	
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절차에 관한 사항	·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, 고객상담센터(1588-9999)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(www.kbstar.com), 금융감독원(1332)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 또한 금융소비자는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36 조 제 1 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	
펀드상품 해피콜 관련 안내	· 투자자가 상품 가입시 해피콜에 동의하는 경우, 7 영업일 이내 본 상품의 판매과정에서 상품 설명이 제대로 되었는지 사후에 점검하는 해피콜을 실시합니다. 단, 해피콜에 동의한 고객의 경우라도 「금융투자업계 해피콜 운영 가이드라인」에 따라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피콜이 실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	
투자자 숙려제도	· 고령, 부적합투자자가 ELF 등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자는 상품의 투자구조 및 투자위험 등을 숙지하고 투자여부를 결정한 후 숙려 기간 종료일까지 취소할 수 있음을 안내받았습니다.	

- 주 1) 금융소비자보호법 판매원칙: 부적합한 금융상품을 권유한 경우(제 17조 제 3 항), 적정하지 않은 금융상품에 대해 부적정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(제 18조 제 2 항), 금융상품에 대해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중요한 사항에 대한 설명을 누락한 경우(제 19조 제 1,3 항),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(제 20조 제 1 항), 부당권유행위의 금지(제 21조)
- 주 2) 해지요구서: 금융상품의 명칭, 법 위반사실을 포함하여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